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310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redacted] 유한회사
피고, 피항소인	[redacted]광역시 [redacted]군수
제 1 심 판 결	대구지방법원 2014. 9. 19. 선고 2014구합21167 판결
변 론 종 결	2015. 11. 27.
판 결 선 고	2015. 12.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137,080원 중 본세 16,600,00원, 지방교육세 2,147,700원 중 본세 1,660,000원, 농어촌특별세 990,850원 중 본세 83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137,080원, 지방교육세 2,147,700원, 농어촌특별세 990,850원 합계 26,275,630원(각 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3.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4. 3. 6.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23,137,080원, 지방교육세 2,147,700원, 농어촌특별세 990,850원 합계 26,275,630원(각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취득세 23,137,080원 중 가산세 6,537,080원, 지방교육세 2,147,700원 중 가산세 487,700원, 농어촌특별세 990,850원 중 가산세 160,85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자신의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인 취득세 23,137,080원 중 본세 16,600,00원, 지방교육세 2,147,700원 중 본세 1,660,000원, 농어촌특별세 990,850원 중 본세 830,000원의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3. 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이하 '자산유동화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의하여 설립된 유동화전문회사로서, 2011. 3. 29. 자산보유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별지 목록(1)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등을 담보로 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는 대출채권을 포함한 유동화자산을 양수하였다.

나. 원고는 위 대출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A)에 직접 참가하여 2012. 2. 21. 위 부동산의 매수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았고, 2012. 3. 27. 매각대금을 모두 완납하였다.

다. 원고는 2012. 4.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83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조세특례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된 후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법'이라 한다.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을 이하 '구법'이라 한다)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라 100분의 50의 세액을 감면하여 계산한 취득세 16,600,000원, 지방교육세 1,660,000원, 농어촌특별세 830,000원 합계 19,090,0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4. 3. 6.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은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별지 목록(2) 기재와 같이 취득세 23,137,080원, 지방교육세 2,147,700원, 농어촌특별세 990,850원 합계 26,275,630원(각 가산세 포함)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의 해석에 따른 감면 주장

구법 제120조 제1항 제12호, 제119조 제1항 제13호(이하 '구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부터 시행된 신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이하 '신법 규정'이라 한다)는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 12. 31.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고 규정하여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그 취득세의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런데 아래와 같은 점에서 신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부동산을 직접 승계취득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채권을 양수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이하 '경매취득의 경우'라 한다)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신법 규정의 '자산유동화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는 유동화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하는데,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담보로 하는 담보부채권을 양수하여 채권회수 목적으로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② 신법 규정의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에서 자산보유자로부터 취득하는 부동산이란 자산보유자에서 비롯되어 취득하게 된 부동산을 의미하는 것이고,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반드시 자산보유자여야 한다는 의미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아니다.

③ 정부제출안에 대한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에서 신법 규정의 법문 내용을 전혀 언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규정이 국민의 권리·의무에 어떠한 변동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였고, 정부제출안에 포함된 비용추계서에도 신법 규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취득 부동산에 관한 취득세 감면 혜택의 폐지 또는 축소를 전제로 한 세수증가를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아니하며, 국회에서도 위 조항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④ 유동화전문회사가 경매취득하는 경우와 직접 자산보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 후자는 현실적으로 거의 이용되고 있지 않고, 유동화전문회사의 경매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중도 폐지는 은행이 보유한 부실채권 및 유동화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려 예상하지 못한 손실을 발생시킨다.

⑤ 연합자산관리 주식회사(이하 '연합자산관리'라 한다)는 2011. 5. 2.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에 신법 시행 후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되는지에 관하여 질의하여 같은 달 4. 감면된다는 취지로 답장을 받았고, 경매취득과 관련하여 유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9. 27. 양산시장으로부터, 유앤더블유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10. 15., 유아이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11. 19. 각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유앤더블유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2. 12. 10.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각 취득세감면결정통지를 받았으며, 김포시장, 군포시장 등도 취득세 50%가 감면됨을 명시적으로 인정하였다. 또한 금융감독원이 2012년 8월경 발행한 '자산유동화실무안내'에도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50%가 감면된다고 기재되어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2) 신뢰보호 원칙 위반 주장

연합자산관리가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로부터 신법 시행 후에도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원고의 실제 업무는 연합자산관리가 수행하고 있으므로, 연합자산관리의 신뢰는 원고의 신뢰로 볼 수 있는 점, 유비제일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경매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양산시장으로부터 지방세감면결정통지를 받은 점, 과세관청은 2012년 말경까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됨을 인정하였고, 정부도 이와 같은 과세행정을 그대로 용인한 점, 정부는 신법 규정의 입법과정에서 취득세 감면 혜택의 축소를 알리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러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위와 같이 믿은 데에 아무런 과실이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

3) 비과세 관행 성립 주장

과세관청은 2012년 말경까지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가 감면됨을 인정하였고, 정부도 이와 같은 과세행정을 그대로 용인한 점, 연합자산관리가 서울특별시 재무국 세무과로부터 신법 시행 후 경매취득의 경우에도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은 점, 유비제일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는 경매취득한 부동산에 관하여 양산시장으로부터 지방세감면결정통지를 받았고,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들도 경매취득의 경우 취득세 감면 통지를 받은 점, 신법 규정은 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조세감면규제법 제114조 제1항 제10호와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신법 규정의 취득세 감면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분은 위법하다.

4) 본세 부분의 절차상 위법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납세고지서로 고지됨으로써 이루어진 것인데, 위 납세고지서에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각 세목의 세율도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피고는 본세와 가산세를 합산하여 부과하였는데, 위 납세고지서만으로는 본세와 가산세를 구분하여 특정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본세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신법 규정의 해석에 따른 감면 주장)

앞서 본 규정의 문언 내용과 체계, 신법 규정은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특례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채권자와의 과세공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법 규정에서 정한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을 취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유동화전문회사가 유동화자산인 부동산 담보부채권을 양수한 후 그 채권의 회수를 위한 담보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직접 매수신청을 하여 취득하는 담보부동산은 '유동화전문회사가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신법 규정에 의한 취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2) 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 및 3)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둘째 주장에 관한 판단은 제8쪽 열다섯째 줄부터 제10쪽 열넷째 줄까지, 셋째 주장에 관한 판단은 제10쪽 열여섯째 줄부터 제11쪽 여덟째 줄까지)의 각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넷째 주장에 관한 판단(본세 부분의 절차상 위법 주장)

가)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바, 위 규정들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세액 및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8두5773 판결,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두3893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납세고지의 하자는 납세의무자가 그 나름대로 산출근거를 알고 있다거나 사실상 이를 알고서 쟁송에 이르렀다 하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라도 치유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1543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이와 같이 납세고지서의 하자를 사전에 보완할 수 있는 서면은 법령 등에 의하여 납세고지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어 납세고지서와 일체를 이룰 수 있는 것에 한정될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두5505 판결 등 참조).

나)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서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 및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이하 '취득세 등'이라 한다)의 각 세액이 기재되어 있을 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의 각 과세표준, 취득세 등의 세목별 세율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취득세 등의 산출근거도 제대로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위 납세고지서에 본세와 가산세도 구분되어 기재되지 않은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처분의 납세고지는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에서 요구하는 각 세목별 과세표준, 적용할 세율 등을 일부 누락한 하자가 있고, 설령 원고가 취득세 등을 신고할 당시나 그 이후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과 세율을 알고 있었더라도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별지 목록(2) '본세'란 기재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 가운데 취득세 23,137,080원 중 본세 16,600,00원, 지방교육세 2,147,700원 중 본세 1,660,000원, 농어촌특별세 990,850원 중 본세 830,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사공영진

판사 장 래 아

판사 정 한 근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목록(1)

1. 대구 달성군 논공읍 상리 764-3 공장용지 3,388㎡

2. 위 지상

 일반철골구조 기타지붕 2층 공장

 1층 공장 480.8㎡

 2층 공장(창고) 420.05㎡

 2층 공장(사무실) 45.5㎡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목록(2)

(단위: 원)

구분	본세	가산세			합계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합계	
취득세	16,600,000	3,320,000	3,217,080	6,537,080	23,137,080
지방교육세	1,660,000	166,000	321,700	487,700	2,147,700
농어촌특별세	830,000		160,850	160,850	990,850
합계	19,090,000	3,486,000	3,699,630	7,185,630	26,275,630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관계법령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5. "유동화전문회사"라 함은 제17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어 자산유동화업무를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①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이하 "유동화전문회사등"이라 한다)는 자산유동화에 관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유동화자산의 범위, 유동화증권의 종류, 유동화자산의 관리방법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계획(이하 "자산유동화계획"이라 한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산유동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 해석의 기준 및 소급과세의 금지)

③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에 대하여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 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54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5조(납세의 고지)

① 지방세를 징수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그 지방세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고지하여야 한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납세의 고지) 법 제55조에 따른 납세의 고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1.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세액·납부기한
2. 세액의 산출근거와 납부장소. 다만, 하나의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로 둘 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납세자가 세액 산출근거의 열람을 신청하는 때에는 세무공무원은 지체 없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화해조서·인낙조서·공정증서 등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민사집행법

제135조(소유권의 취득시기)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한다.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해서는 등록세를 면제(제13호 및 제28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관한 등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나.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다.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면제(제12호 및 제24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2. 유동화전문회사가 제1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 구 조세특례제한법 (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된 후 2013. 1. 1. 법률 제116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등록면허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또는 등록에 대하여는 등록면허세를 면제(제3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28조 제2항·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유동화전문회사"라 한다)가 같은 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동화자산을 양수하거나 양수한 유동화자산을 관리·운용·처분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기
가. 저당권의 이전에 관한 등기
나. 경매신청,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등기 또는 가등기

제120조(취득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제9호 및 제17호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이 경우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본문 및 제3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자산보유자 또는 다른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

부칙 <법률 제10406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4조의2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의2 제4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73조(제1항 제14호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 제88조의4 제13항, 제104조의16 제4항 제2호 및 제1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⑥ 이 법 중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득 또는 등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6-02-03

■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 9. 16. 법률 제5561호로 개정된 것)

제114조 (취득세의 면제등)

① 다음 각 호의 재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 제40조의7 제3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10.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보유자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부동산 <끝>